

교육부령 제192호

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 결정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징계기준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징계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 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 결정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비위 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 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 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</u>